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9. 6.

장 충 동



1. 대상자

대 상 자		세대주 성명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 명	생년월일			
김*헌	2001-03-29	김*택	2018-05-01 ~ 2019-04-30	등기우편 반송
이*우	2001-05-01	이*범	2018-06-01 ~ 2019-05-31	등기우편 반송
이*진	2001-05-07	이*호	2018-06-01 ~ 2019-05-31	등기우편 반송
정*영	2001-08-11	정*성	2018-09-01 ~ 2019-08-31	등기우편 반송

2.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·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
3. 공고기간 : 2018. 9. 6. ~ 2018. 9. 30.

4. 준비물

- 1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포함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(신분증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2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.
(3cm×4cm 또는 3.5cm× 4.5cm)

-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,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(담당자 : 정영주, 전화번호 : 02-3396-6624)